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 3707-9275/6 전송 3707-9289  
 처리부서 : 주택개량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열관 2층)담당 : 유철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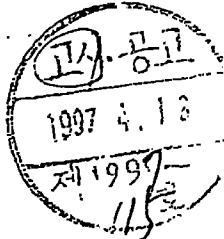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개 58533 - 882

시행일자 1997. 4. 16

(경유) (계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법무담당관 <b>심사필</b>
주택 국 정	전 결	
주택개량과장		
개량 2 계장		
기안	유철중	협조

제목 **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용도지역·지구변경결정**

1. 건설부고시 제1992-245호('92.5.2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43호('93.8.9)로 개선계획수립된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·지구변경결정 요청이 있어

2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·지구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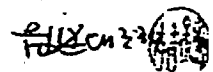
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㎡)
	당 초	변 경	
강북구 미아동 791 번지일대	일반주거지역	1종일반주거지역	16,100

나.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지구명	위 치	면 적 (㎡)	
			당 초	변 경
풍치지구	수유지구	강북구 미아동 791 번지일대	1,440,041	1,423,941 (감 16,100)

붙임 고시(안) 및 고시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장



(제 2 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참조 법무담당관

제목 관보게재 의뢰

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 · 지구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·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· 같은법시행령 제8조

· 붙임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주택관리과장

제목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용도지역 · 지구변경결정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1992-245호('92.5.2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43호('93.8.16)로 개선계획수립된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

2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· 지구변경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.

· 붙임 고시(안) 및 고시도면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 강북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용도지역 · 지구변경결정 통보

1. 건설부고시 제1992-245호('92.5.2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43호('93.8.16)로 개선계획수립된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

2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· 지구

변경결정하였기 통보하니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관계도서를 해당부서와 등사무소에 통보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

· 불임 고시(안) 및 고시도면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받는곳참조

제목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시계획용도지역·지구변경결정 통보

1. 건설부고시 제1992-245호('92.5.2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43호('93.8.16)로 개선계획수립된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·지구변경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· 불임 고시(안) 및 고시도면 1부. 끝.

## 주택개량과장

· 받는곳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

# 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

호

제1차 심사	1997.4.17	1차 회
담당자	법제실장	담당

## 도 시 계 획 변 경 결 정

1. 건설부고시 제1992-245호('92.5.21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43호('93.8.9)로 개선계획수립된 미아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·지구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지합니다.
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강북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7년 4월 일

서울특별시장

### 가.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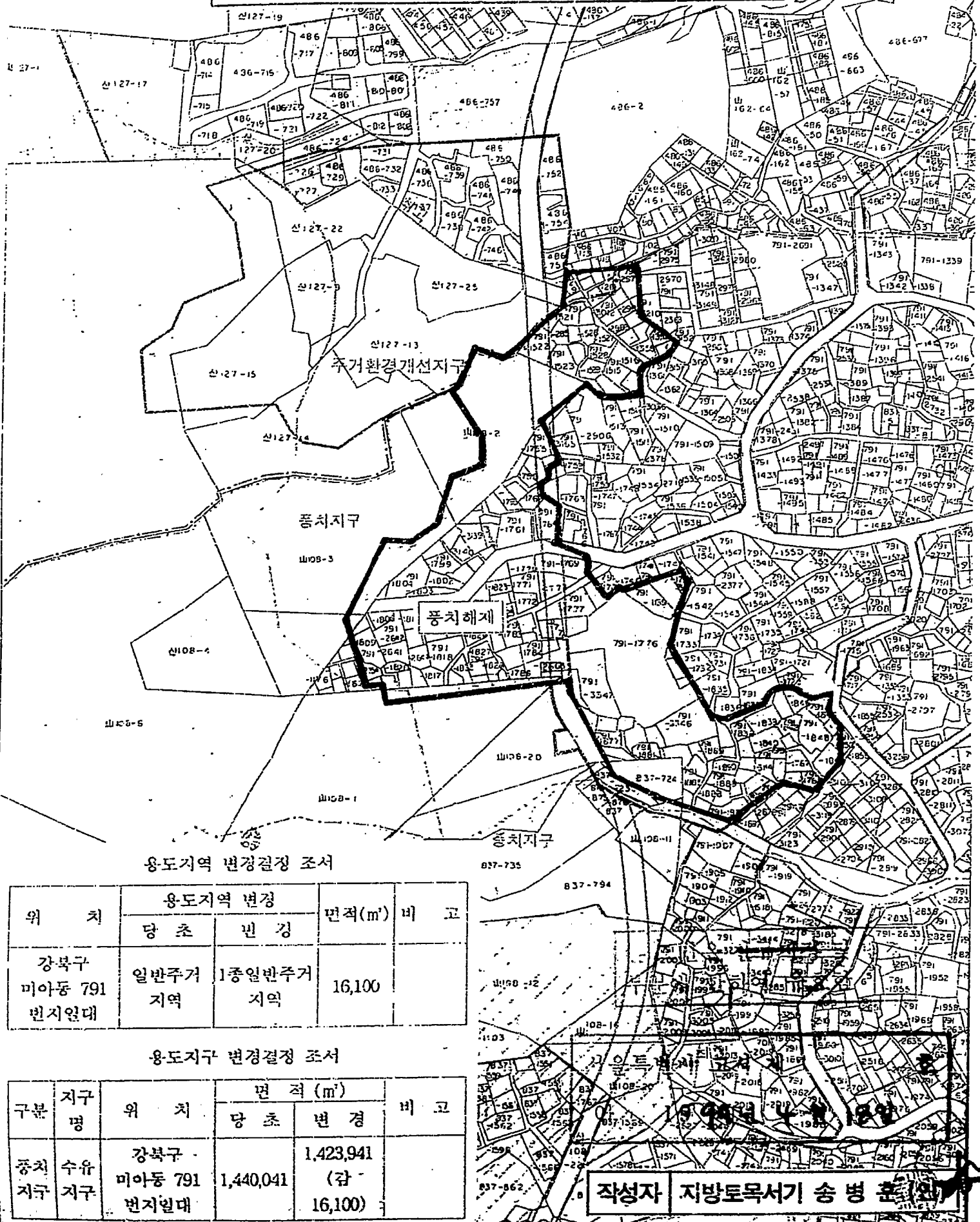
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㎡)
	당 초	변 경	
강북구 미아동 791 번지일대	일반주거지역	1종일반주거지역	16,100

### 나.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용도지구명	위 치	면 적 (㎡)	
			당 초	변 경
풍치지구	수유지구	강북구 미아동 791 번지일대	1,440,041	1,423,941 (감 16,100)

다. 도면 : 생략 (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강북구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)

# 도시계획용도지역 · 지구변경결정



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

위 치	용도지역 변경		면적(m <sup>2</sup> )	비 고
	당 초	변 경		
강북구 미아동 791 번지일대	일반주거 지역	1종일반주거 지역	16,100	

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지구 명	위 치	면 적 (m <sup>2</sup> )		비 고
			당 초	변 경	
중치 지구	수유 지구	강북구 · 미아동 791 번지일대	1,440,041	1,423,941 (감 16,100)	

작성자 지방토목서기 송 병 훈